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5. 12. 23.>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요건(제4조의5제2항 관련)

구분	세부기준
1. 시설 및 장비	가. 교육시설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 운영을 위한 상시 활용이 가능한 1실 이상의 강의실(연면적 49.5㎡ 이상으로 할 것) 및 실습장 등 교육시설과 컴퓨터·빔 프로젝터 등 교육장비를 갖추어 것 다. 화장실은 수강생 인원수에 맞는 적절한 규모를 갖추어 것 라. 식수로 사용하는 물은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마. 교육환경에 방해되지 않도록 방음시설, 환기시설, 냉방·난방시설, 창문 등 채광시설 및 조명시설을 갖추어 것 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등을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사. 그 밖에 학습자의 편의를 위해 강당, 회의실, 사무실, 자료실, 도서실, 상담실, 컴퓨터실, 방송·통신시설, 보건실 등 필요한 시설을 둘 것
2. 인력	가.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전임강사 및 전문강사를 확보할 것. 이 경우 전임강사는 1명 이상이어야 한다. 나. 가목의 전임강사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에서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했을 것 다.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전담하여 운영·관리하는 관리자를 1명 이상 확보할 것
3. 교육과정	가. 교육과정은 1급·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것 나. 각 교육과정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1급·2급 산림치유지도사의 업무범위를 고려하여 교육과목을 구성할 것

	1) 산림치유 대상의 이해 2) 산림치유 자원의 이해 3) 산림치유의 기획·관리 4) 산림치유의 실행 5) 발표 및 선택과목 다. 그 밖에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	--

비고

1. 제2호에 따른 교육 담당 인력 및 관리자는 각각 별도로 두어야 한다.
2. 기관의 대표자가 제2호에 따른 교육 담당 인력(전임강사의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이나 관리자의 업무 중 하나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해당 인력 산정에 포함한다.